

생활관운영규정

제정일 : 2001. 06. 19.

개정일 : 2019. 01.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생활관의 명칭은 한세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생활관은 향학열이 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학생을 선발하여 면학에 정진케 하며, 오순절 신앙과 그리스도의 정신 및 그 실천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며 정신의 순화와 규율과 절제 있는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본 대학의 학풍조성의 핵심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 유능한 교역자 및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강의기간 중에 개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개정 2019.1.11.)

제4조(휴관) 방학기간에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개관하며, 그 목적은 동일하다.(개정 2019.1.11.)

제5조(관생생활규칙) 관장은 관내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생생활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 생활관에는 관장과 사감, 간사를 둔다.(개정 2005.3.1.)

제7조(관장)

1. 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1.14)
2.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3. 관장은 관내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공동생활을 통한 관생의 인격도야와 정서의 순화를 위해 힘쓰며 오순절 신앙으로 영적 지도를 한다.(개정 2019.1.11.)
4. 관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0.20.)
5. 관장은 당해 학기의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학기 20일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감) 관생의 지도를 위하여 생활관 사감(이하 직원)을 둔다.

제9조(사감의 의무와 권한)

1. 사감은 관내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관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생활관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가. 관생들의 관생수칙 이행 지도 업무 및 처벌권(개정 2019.1.11.)
- 나. 각종 행사 및 집회 승인 지도 업무
- 다. 안전 지도 업무
- 라. 관생상담 업무
- 마. 관리비 등의 지출에 관한 재정 업무
- 바.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
- 사. 비관생이나 외부인 출입 통제 업무(개정 2019.1.11.)

제10조(간사) 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남, 여별로 생활관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11.)

제11조(간사의 업무)

1. 간사는 관내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2. 생활관 간사는 사감과 함께 제반 업무에 협력 수행한다.
 - 가. 관생수칙 이행 지도업무
 - 나. 상별점 관리 및 부여(개정 2019.1.11.)
 - 다. 시설관리 및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
 - 라. 기타 관장이 부여한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구성) 위원회의 장은 학생지원처장(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9.25., 2005.3.1., 2012.10.20., 2014.10.22., 2019.1.11.)

제14조(회의)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규정에 관한 사항
4. 관생생활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5.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

제4장 입관 및 퇴관

제16조(입관) 입관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관원서 및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7조(관생선발) 관장은 다음 기준에 의거 입관자를 선발한다.

1. 본 대학(대학원) 학생으로서 매 학기 등록금 및 관리비를 납부한 자(개정 2019.1.11.)
2. 향학열이 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신앙심이 돈독하여 타의 모범인 자(개정 2019.1.11.)

3. 입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개정 2005.3.1.)

1) 신입생(복학생, 편입생 포함)의 선발 우선순위

- ① 신체조건 (장애인)(개정 2012.10.20.)
- ② 외국인학생(유학생, 교환학생, 어학연수생)(개정 2019.1.11.)
- ③ 규정집에 의거한 거리 환산 점수

2) 재학생의 선발 우선순위(1차 선발)

- ① 규정집에 의거한 직전학기, 상벌점, 학점 및 거리 환산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정한다.(개정 2019.1.11.)
- ② 관장이 상담 후 추천하는 학생은 선발 할 수 있다.(개정 2012.10.20.)
- ③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개정 2019.1.11.)

3) 추가 입사자의 선발 우선순위(개정 2019.1.11.)

- ① 규정에 의거한 직전학기 상벌점, 학점 및 거리 환산 점수를 합하여 순위를 정한다.(신설 2019.1.11.)

4) 동점자는 아래와 같은 선발 우선순위를 둔다.

- ① 상벌점
- ② 성적(직전학기) - 학점 (예: 4.08)
- ③ 거리
- ④ 저학년(학차)우선
- ⑤ 신청 순위(접수기간 내)

4. 환산점수(개정 2005.3.1., 2019.1.11.)

1) 거리점수(개정 2019.1.11.)

지 역 구 분	평점	추가입사자
재외국인	100	100
제주 외 섬	60	40
경상, 전라도, 강원(영동)	50	30
강원(영서), 충청도	40	20
경기 원거리	30	15
서울(한강북), 인천, 부천, 성남, 평택, 용인	25	10
서울	20	5
수원, 안양, 군포, 과천, 안산	10	0

2) 상벌점 점수(개정 2019.1.11.) (표 삭제 2019.1.11.)

- ① 2019-1학기부터 상점과 벌점은 그 점수 그대로 반영하여 운영한다.(신설 2019.1.11.)
- ② 생활수칙(별점표) (신설 2019.1.11.)

내용	점수	내용	점수
방에서 인화물질 사용자(취사)	50점	시설물 훼손자 (변상조치)	30점
철문, 비상계단 이용자	30점	통금시간불이행자	30점
외부 동숙자 /	혼성	지정된 기간내 납부금미	퇴관

이성-퇴관	50점	남자	
무단외박자	30점	무단으로 이성의 방에 출입한자	퇴관
새벽예배 및 행사 불참자	30점	관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퇴관
세콤 잠김이후 세콤문 개방	30점	단체 생활에 부적격 자	퇴관

3) 성적환산점수

성 적	평 점	추가입사자
4.41 - 4.50	60	60
4.31 - 4.40	50	50
4.21 - 4.30	40	45
4.01 - 4.20	35	40
3.81 - 4.00	30	35
3.61 - 3.80	25	30
3.41 - 3.60	20	25
3.21 - 3.40	15	20
3.00 - 3.20	10	15
3.00 이하	5	10

5. 생활관의 제반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6. 대학원에 한하여 입관정원의 20%내에서 선발한다.
7. 모든 입관자는 입관원서와 함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개정 2019.1.11.)
8. 모든 입관자는 생활관 규정집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8조(입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

1. (삭제 2019.1.11.)
2.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
3. 퇴관 처분을 받았던 자
4. 교내 채플 출석 미달자
5.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6. 휴학자
7.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19조(퇴관처분)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퇴관 시킨다.(개정 2019.1.11.)

1.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2. 관생수칙에 의거 벌점 100점에 달한 자
3. 지시에 불응하며 질서를 어지럽힌 자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퇴관 처분 받은 자는 공고 후 3일 이내에 완전 퇴관 한다.(단, 불응자는 학칙에 의거 처리

한다.

6. 관생의 개인사정으로 퇴관코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특별회계) ①생활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서 독립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생활관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에 준하며, 관내 생활회계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생활관비) 관생은 생활관 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생활관비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관리비는 생활관장이 운용한다. (개정 2019.1.11.)

1. 개관 후 추가 입관자의 생활관비(%)(개정 2019.1.11.)

입 관 구 분	생 활 관 비	비 고
4주 이내	100	
8주 이내	70	
8주 이후	50	

2. 퇴관시 환불(단, 규정위반으로 환불금의 위약금 20% 제외) (개정 2019.1.11.)

퇴 사 구 분	생 활 관 비	비 고
입사 포기자	100%	
4주 이내 퇴관	70%	
8주 이내 퇴관	40%	
12주 이내 퇴관	20%	
12주 이후 퇴관	0%	

제22조 (생활관비의 용도) 생활관비는 다음에 열거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

1. 부대시설 보수 및 물품구입과 수리비
2. 인건비, 방열비, 소모품비
3. 학생지도 특별수당 및 기타 경상비에 충당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①생활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생활관장은 매회계년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개 정

제24조(개정) 이 규정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안하고 기획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본 규정 시행일부터 생활관 규정은 자동 폐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